

보조금법 위반행위자 조사 보고서

2020. 02. 24. [월]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부

I. 조사실시 개요

□ 조사 배경 및 목적

- 문예기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익명의 제보(전자우편)를 접수
- 해당단체에 대한 혐의사실 여부 조사를 통해 보조금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등 조치

□ 조사대상

-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사업 보조사업자 : □□□□□□□□ 1개처
- ☆☆☆☆☆☆☆☆☆사업(연구생) 보조금수령자 : AAA 1명

□ 감사인원 및 기간

- 감사인원 : FFF 1명
- 감사대상별 대면조사 일정
 - □□□□□□□□ : '19.12.26.(목) ~ 12.27.(금)
 - ☆☆☆☆ 연구생(AAA) : '20.1.29.(수) / 2.5.(수)

□ 조사 중점사항

- 보조금 수급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점검 및 보조금 운용 지침(조건 등) 준수 여부 조사
- 유용 보조금의 사적사용 등 횡령 여부 조사

□ 처리계획

-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조치
- 보조금 횡령 등 사적유용 등 발견 시 '고발' 처리

Ⅱ. 조사결과 및 처분요구

□ 조사결과 및 지적사항(요약)

① ☆☆☆☆☆☆☆☆☆ 연구생 「보조금법」 제30조 등 위반

- '19년도 ☆☆☆☆☆☆ 지원신청에 있어서 학부대학원 재학생은 지원신청이 불가(6월 이후, 휴학생 가능)함으로 제한을 하였으며 관련내용을 사업설명회와 연구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내하였다.
- 그런데 선발된 연구생(AAA)는 위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'19.6.13. 대학원 합격사실과 가을학기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'19.9월부터 대학원을 다녔으며 ☆☆☆☆ 관련 보조금 13,000,000원을 교부받았다.
- 위 상기인의 행위는 「보조금법」 제33조제1항제3호 및 「보조금법」 제30조제1항제3호, 『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』 지원협약서 제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(2차 보조금)를 취소한다.

② 보조사업자 '□□□□□□□□' 「보조금법」 제22조 등 위반

- 위 단체는 2019년도 ◎◎◎◎◎◎◎◎◎◎사업으로 보조금 15,000,000원을 교부받았으며, 「보조금법」 및 예술위 보조금 관련 지침 등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였다.
- 그런데 위 단체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던 소속 근로자가 '19.10.14.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유하여 '19.10.14.부터 11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 후 다시 다른계좌로 돌려받는 행위(인건비 페이백)를 하였다.
- 위 단체는 「보조금법」 제22조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편취하고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려 하였다.

□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원 명)

총 건수	합계		변상	징계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
	신분상 조치 인원	재정상 조치 금액			소계	추징	회수/ 환수	기타						
4	-	13,250,000	-	-	13,250,000	-	13,250,000	-	-	-	1	1	-	-

□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일련 번호	감사대상기관 (관계기관/부서)	건 명	처 분 요 구 (원, 명)			조치 기한	감사자
			처분 종류	재정상 조치금액	신분상 조치인원		
1	☆☆☆☆ 연구생 (보조금수령자) · GGGGG	「보조금법」 제30조, 제33조 등을 위반에 따른 교부금 결정 일부를 취소하고 2차 보조금 11,000,000원과 이자 등 회수 조치	시정 (회수)	11,000,000	-	'20.4.24	FFF
2	GGGGG	사업취지와 성과를 위하여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나 오히려 우수한 연구생 선발과 연구생의 대외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측면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판단되는 바 사업개선을 권고	권고	-	-	'20.4.24	FFF
3	□□□□□□□□ (보조사업자) · GGGGG	「보조금법」 제22조 등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「보조금법」 제30조제1항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를 취소하고 2,250,000원(인건비 페이백) 회수 조치	시정 (회수)	2,250,000	-	'20.4.24	FFF
4	GGGGG	예술위 『보조금 운영관리 규정』 별표3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	통보	-	-	'20.4.24	FFF

붙임 1.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사업 위반행위자 처분요구서(증거자료 목록 포함)

붙임 2.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사업 위반행위단체 처분요구서(증거자료 목록 포함)